

## 7월 시행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9호, 2021. 1. 5., 일부개정]

고용보험법의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i)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ii)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관련한 특정 정보들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이를 따라야만 합니다. (iii) 또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iv) 특히, 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노동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③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